

2022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 금융감독원, 2023. 9

< 주요 내용 >

□ (분석 결과) 상장법인 2,511사의 202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은 97.9%로 新 외부감사법 시행('19회계연도) 이후 97%대를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9년) 97.2% → ('20년) 97.0% → ('21년) 97.2% → ('22년) 97.9%

○ 강조사항 기재 건수는 큰 폭 감소(△291건)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관련 강조사항*이 감소(△375건)한데 주로 기인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강조사항 : ('20년) 369건 → ('21년) 341건 → ('22년) 50건

○ 또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에도 계속기업 영위가 불확실한 것으로 기재된 회사는 85사*로 이 중 소규모 기업(자산 1천억 미만)이 71.8%(61사)를 차지하였습니다.

* 적정의견 + 계속기업 불확실성 : ('20년) 105사 → ('21년) 92사 → ('22년) 85사

자산규모별(85사) : 1천억 미만(61사), 1천억~5천억(15사), 5천억~2조(7사), 2조 이상(2사)

□ (시사점)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2020 회계연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우려와 달리 새로운 회계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20년) 71사 → ('21년) 68사 → ('22년) 53사

** 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대상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강화(검토 → 감사) 등

○ 전기재무제표 수정 건이 48건(13.1%)으로 여전한 바, 기업들은 재무제표 수정 등 회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충실하게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감사보고 이용자들은 의사결정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한 회사의 위험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감사의견이 적정임에도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한 상장법인의 경우 재무상황 및 영업환경 등의 개선이 없는 경우 향후 비적정의견을 받거나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음



I 분석 결과

◆ (분석대상) 상장법인 2,511사*의 FY2022 감사보고서를 분석

- * '23.3월말 주권상장법인 2,589사 중 외국법인, 페이퍼컴퍼니 등 78사 제외
- 유가증권 796사(31.7%), 코스닥 1,584사(63.1%), 코넥스 131사(5.2%)
- 12월 결산 2,473사(98.5%), 연결재무제표 작성 1,943사(77.4%)

1 감사의견 현황

- (적정의견) 적정의견 비율은 97.9%로 新 외부감사법 시행('19회계연도) 이후 큰 변동 없이 일정 수준*(97%대) 유지
 - * 적정의견 비율: ('19년) 97.2% → ('20년) 97.0% → ('21년) 97.2% → ('22년) 97.9%
- (비적정의견) 상장법인 53사가 비적정의견으로 전기(68사) 대비 15사 감소
 - 한정 의견 7사, 의견거절* 46사로 의견거절은 '20년을 정점(65사)으로 감소 추세*
 - * ('20년) 65사 → ('21년) 58사 → ('22년) 46사
 - 비적정의견*은 감사범위제한(45사), 계속기업 불확실성(26사)이 주요 원인
 - * 한 기업의 비적정의견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중복하여 계산

최근 5년간 적정의견 및 비적정의견 현황 (단위 : 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적정	2,187	2,236	2,293	2,360	2,458
(비율)	(98.1)	(97.2)	(97.0)	(97.2)	(97.9)
비적정	43	65	71	68	53
○ 한정	8	7	6	10	7
○ 의견거절	35	58	65	58	46
합계	2,230	2,301	2,364	2,428	2,511

- (감사수입 유형별 분포) 감사인 지정 법인의 적정의견 비율(96.6%)은 자유수입(99.2%) 보다 2.6%p 낮으며, 차이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
 - * 자유수입 - 지정: ('19년) 15.1%p → ('20년) 6.2%p → ('21년) 3.5%p → ('22년) 2.6%p
- 이는 재무상황이 우량하고 감사위험이 높지 않은 상장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153사, 적정 99.7%) 비중*이 계속 높아진 것에 기인
 - * 주기적 지정 비중 : ('20년) 28.9% → ('21년) 41.8% → ('22년) 46.7% (+4.9%p)

최근 5년간 감사인 선임방법별 적정의견 비율 (단위: 사, %, %p)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자유수입	회사 수	1,998	2,160	1,597	1,397	1,262
	적정의견 비율(a)	99.1	98.1	99.0	98.7	99.2
지정	회사 수	232	141	767	1,031	1,249
	적정의견 비율(b)	89.2	83.0	92.8	95.2	96.6
차이 (a)-(b)		9.9	15.1	6.2	3.5	2.6

- (자산규모별 분포) 적정의견 비율은 기업규모에 비례하였으며, 1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이 95.6%로 가장 낮았음
 -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비적정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임

2022 회계연도 자산규모별 적정의견 비율 (단위: 사, %)

구 분	1천억원 미만		1천억 ~5천억원		5천억 ~2조원		2조원 이상		합 계	
	사	비율	사	비율	사	비율	사	비율	사	비율
적정	890	95.6	1,053	99.1	318	99.4	197	100.0	2,458	97.9
한정	5	0.5	2	0.2	0	-	0	0.0	7	0.3
의견 거절	36	3.9	8	0.8	2	0.6	0	0.0	46	1.8
합 계	931	100.0	1,063	100.0	320	100.0	197	100.0	2,511	100.0

2 강조사항 등 유의사항 기재 현황

- (강조사항)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을 기재한 상장법인은 289사(11.5%)로, 전기(572사, 23.6%) 대비 크게(△283사, △12.0%p) 감소
 - *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사항
 - 코로나19 영향 강조사항 기재가 전기(전기 341건, 46.0%) 대비 크게 감소*(△291건, △32.4%p)한 것이 주요 원인
 - * 전체 감소(△375건)의 많은 부분(77.6%)을 코로나19 영향 강조사항이 차지



- 그 외 전기 재무제표 수정, 중요한 거래 관련 강조사항의 감소가 있었고, 합병 등 영업환경 변화에 대한 강조사항은 소폭 증가

감사보고서 강조사항 주요 내용 (단위: 건, 사)			
항목별 구분	2021 회계연도	2022 회계연도	증 감
합병 등 영업환경·지배구조 변화	78	92	14
소송 등 영업환경의 중대한 불확실성	375	85	△290
코로나 19 영향	341	50	△291
회계 변경	99	78	△21
전기 재무제표 수정	81	48	△33
중요한 거래(특수관계자 거래, BS일 후 사건 등)	105	64	△41
기타(신규상장, 관리종목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85	48	△37
강조사항 합계	742	367	△375
기재기업 수	572	289	△283

- (계속기업 불확실성) 적정의견 법인(2,458사)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상장법인은 85사로 전기(92사) 대비 7사 감소*

* (규모별(85사) : 1천억 미만(61사), 1천억~5천억(15사), 5천억~2조(7사), 2조 이상(2사)

- '21년에 적정의견을 받았으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한 상장법인(92사)의 차기 상장폐지·비적정의견 비율은 12.0%로 미기재 법인(1.9%)보다 약 6배 높았음

3 감사인 분포

- (회계법인 규모별) 4대 회계법인(Big4, 삼일, 삼정, 한영, 안진)의 상장법인 감사비중*은 '20 회계연도 이후 31~32%대 수준을 유지

* 감사대상 상장법인 수 기준 : ('20년) 31.0% → ('21년) 32.6% → ('22년) 31.8%

- 중견회계법인(Top10 중 하위 6사)의 감사 비중(32.3%)도 소폭(+1.1%p) 증가

최근 5년간 Big4의 감사대상 상장법인 수 및 감사비중 (단위: 사,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Big4	953	879	734	792	798
분석 기업	2,230	2,301	2,364	2,428	2,511
Big4 비중 (증감)	42.7 (△2.0)	38.2 (△4.5)	31.0 (△7.2)	32.6 (+1.6)	31.8 (△0.8)

- (감사대상 자산규모별) Big4의 자산 2조원 이상, 5천억~2조원 미만 상장법인 감사비중은 각

- 각 92.4%, 57.8%로 Big4 비중이 높음
- 자산 5천억원 미만 중소형 상장법인의 Non-Big4 비중*은 78.4%
 - * 자산 5천억원 미만 Non-Big4 비중 : ('20년) 79.6% → ('21년) 78.0% → ('22년) 78.4%

4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 ※ FY202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 직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1,510사
- (감사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의견 비율은 2.5%(38사)로 전기(445사 중 비적정 4사, 0.9%) 대비 2.8배 증가*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증가(+1,065사) 및 인증수준 강화(검토→감사)로 비적정의견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비적정의견 38사 중 부적정의견은 20사, 의견거절은 18사로 이 중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비적정의견을 받은 법인은 21사
 - * 부적정의견 : 평가기준일 현재 하나 이상의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할 경우
의견거절 :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감사범위 제한)

II 시사점

- ① 비적정의견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
 - 감사의견 중 적정의견 비율*은 新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큰 변동 없이 일정 수준(97%대)을 유지하고 있으며,
 - 비적정의견을 받은 상장법인은 '20회계연도 이후 매년 감소 추세**
 - * 적정의견 비율 : ('20년) 97.0% → ('21년) 97.2% → ('22년) 97.9%
 - ** 비적정의견(한정, 의견거절) 수 : ('20년) 71사 → ('21년) 68사 → ('22년) 53사
 - 엄격한 감사환경을 조성한 새로운 회계제도*가 점진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 대상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

⇒ 회계개혁 제도의 정착을 위한 「회계제도 보완방안*」이 마련된 바, 금감원은 안정적 운영 및 제도 정착을 위해 계속 지원할 예정
상장법인도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등을 통해 재무제표가 적절하게 작성·공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필요
* (보도자료, 2023.6.12.) 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계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② 재무제표 수정내역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예정

- '22회계연도 강조사항 기재가 큰 폭의 감소*(△375건)가 있었으나, 전기재무제표 수정 기재건은 48건(13.1%)으로 여전히 많은 편

* 코로나19 관련 강조사항 기재 감소가 291건으로 77.6%를 차지

⇒ 금감원은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수정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감리 등을 통해 업정 조치 예정
회사는 재무제표 수정 등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충실하게 구축·운영할 필요

③ 감사보고서상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내용에 유의 필요

-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에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법인*이 다음 해에 감사의견 변형,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미기재 법인에 비해 높았음

* ('18년) 85사 → ('19년) 84사 → ('20년) 105사 → ('21년) 92사 → ('22년) 85사
자산규모별(85사): 1천억 미만(61사), 1천억~5천억(15사), 5천억~2조(7사), 2조 이상(2사)

⇒ 감사보고서 이용자는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내용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중·소규모 상장법인이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경우 향후 감사의견 변형,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음에 특히 주의 필요

④ 상장법인 규모에 따른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분포가 양분화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4대 회계법인(Big4) 감사비중은 92.4%이며, 자산 5천억원 미만 중·소형 상장법인의 Non-Big4 비중은 78.4%로 자산규모에 따른 회계법인 분포*가 양분

* 자산 2조원 이상 Big4 비중 : ('20년) 94.7% → ('21년) 94.2% → ('22년) 92.4%
자산 5천억원 미만 Non-Big4 비중 : ('20년) 79.6% → ('21년) 78.0% → ('22년) 78.4%

⇒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제고, 감사품질 경쟁 촉진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방안*을 추진 중
회계법인은 가격중심의 수임경쟁을 지양하고 감사품질 개선 노력을 통해 외부감사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
* (보도자료, 2023.6.12.) 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계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붙임 1 - 참고 통계자료

1 분석대상 상장법인

가. 시장별 분포

(단위: 사)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유가증권	769	775	778	792	796
코스닥	1,311	1,379	1,447	1,508	1,584
코넥스	150	147	139	128	131
합 계	2,230	2,301	2,364	2,428	2,511

나. 결산월별 분포

(단위: 사,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12월	2,191	2,260	2,323	2,388	2,474
(비율)	(98.3)	(98.2)	(98.3)	(98.4)	(98.5)
3월	20	20	19	19	16
6월	11	13	14	12	13
기타	8	8	8	9	8
합 계	2,230	2,301	2,364	2,428	2,511

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단위: 사,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결	1,684	1,758	1,820	1,864	1,943
(비율)	(75.5)	(76.4)	(77.0)	(76.8)	(77.4)
개별	546	543	544	564	568
합 계	2,230	2,301	2,364	2,428	2,511

2 감사의견

가. 감사의견 현황

(단위: 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적정	2,187	2,236	2,293	2,360	2,458
한정	8	7	6	10	7
부적정	-	-	-	-	-
의견거절	35	58	65	58	46
합계	2,230	2,301	2,364	2,428	2,511

나. 시장별 감사의견 적정/비적정 현황

(단위: 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적정	비적정								
유가증권	763	6	768	7	768	10	785	7	786	10
코스닥	1,280	31	1,330	49	1,397	50	1,463	45	1,551	33
코넥스	144	6	138	9	128	11	112	16	121	10
합계	2,187	43	2,236	65	2,293	71	2,360	68	2,458	53

다. 감사수입 유형별 감사의견 적정/비적정 현황

(단위: 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적정	비적정								
자유수입	1,980	18	2,119	41	1,581	16	1,379	18	1,252	10
감사인지정	207	25	117	24	712	55	981	50	1,206	43
합계	2,187	43	2,236	65	2,293	71	2,360	68	2,458	53

라. 자산규모별 감사의견 적정/비적정 현황

(단위: 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적정	비적정								
2조원 이상	209	1	168	-	171	-	190	-	197	-
5천억 ~ 2조원	307	-	246	-	268	2	295	1	318	2
1천억 ~ 5천억원	874	16	943	12	970	12	1,020	8	1,053	10
1천억원 미만	797	26	879	53	884	57	855	59	890	41
합계	2,187	43	2,236	65	2,293	71	2,360	68	2,458	53

붙임 2 - 감사보고서의 개요

1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記述)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아래 기한까지 회사·증권선물위원회·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야 함

<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제출처	제출기한
회사	정기주주총회 1주 전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2주 이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면,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新외감법 §23)

2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가. 감사의견

- (종류) 감사범위 제한 여부, 회계처리기준 위배 여부, 계속기업으로 존속가능성 등에 따라 적정·한정·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

구 분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input type="checkbox"/> 감사범위 제한 • 경미 • 중요 • 특히 중요	○	○ ²⁾		○ ³⁾
<input type="checkbox"/> 회계처리기준의 위배 • 경미 • 중요 • 특히 중요	○	○ ²⁾	○ ³⁾	
<input type="checkbox"/> 계속기업 가정 • 타당하나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 - 적절하게 공시 - 부적절하게 공시 • 타당하지 않음	○ ¹⁾	○ ²⁾	○ ³⁾ ○ ⁴⁾	

주: 1) 재무제표 주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별도단락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감사기준서 570 문단 22)

2) 그 영향이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감사기준서 705 문단 7, 감사기준서 570 문단



23)

3) 그 영향이 중요하며 전반적임(감사기준서 705 문단 8~9, 감사기준서 570 문단 23)

4)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계속기업 가정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감사기준서 570 문단 21)

- ① (적정의견)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할 때 표명하는 의견
- ② (한정의견)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불일치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영향이 중요하므로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 표명을 거절하여야 할 정도로는 중요하지 않거나 전반적이지 않을 때 표명하는 의견
- ③ (부적정의견)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우 표명하는 의견
- ④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판단이 불가능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음

나. 강조사항

□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표시·공시된 사항을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하여, 감사인이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감사보고서에 언급하는 사항

* (예) 회계변경, 중요 거래(특수관계자 거래 등), 중대한 불확실성(소송 등) 등

다. 계속기업 불확실성

□ 기업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발생 시, 그 내용이 적절히 공시되었는지에 대해 감사인이 평가

- 중요한 불확실성이 없고 계속기업 가정이 유효한 경우 기업은 관련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고, 감사인은 그 적정성을 평가
-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계속기업 가정에 의문이 있을 때 기업은 관련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별도단락에 기재

라. 핵심감사사항

□ 감사인은 감사위원회 등 기업의 내부감시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선정 이유, 감사인이 수행한 절차 및 그 결과를 기술